

#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6. 4. 2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목적)** 본 센터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성 및 개성의 개발과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을 통해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체험교육 · 학교외 교육 · 봉사교육 · 위탁교육 · 파견교육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본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,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장, 연구원 및 교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**제5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 운영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 · 폐에 관한 사항
3. 센터 예 · 결산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신청 · 평가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**제7조(기타)**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